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고영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
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제3항, 제6조제6항, 제7조)
- 조문의 주어인 “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”을 추가(안 제4조)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5조)
- 조문 제목 및 인용 조항 변경(안 제6조)

- 지원대상 사업 등에 “재향군인회 운영비” 추가(안 제6조제5호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호를 신설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“재향 군인회 운영비”를 추가하였음.
-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